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8. 17 선고 2021가합1055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피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관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덕우

변론 종결 2022. 7. 13.

판결 선고 2022. 8.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 3.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식회사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3. 16. 접수 제531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21. 5.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주식회사 C에게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5. 10. 접수 제972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① 2019. 5. 31. C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297,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19. 5. 31.부터 2019. 6. 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후 신용보증기간은 2020. 6. 3.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20. 7. 31. C가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47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20. 7. 31.부터 2021. 7.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③ C가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90,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20. 8. 6.부터 2021. 8.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④ C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을 378,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20. 9. 24.부터 2030. 9.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C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C가 D은행, E은행, F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을 경우 위 신용보증원금 및 종속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C는 장차 원고가 위 각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③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④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C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 E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 F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및 4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들과 주식회사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C는 2021. 3.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3. 16. 접수 제5312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C는 2021. 5. 7.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6,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5. 10. 접수 제9724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대위변제금 잔액 등

1) C는 2021. 5. 4.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D은행, E은행, F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을 각 청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1. 8. 6.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대출원리금 299,922,398원(원금 297,000,000원 + 이자 2,922,398원), 2021. 8. 13.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E은행에 대출원리금 479,010,821원(원금 475,000,000원 + 이자 4,010,821원), 2021. 9. 14. F은행에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90,934,470원(원금 90,000,000원 + 이자 934,470원), 이 사건 제4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191,482,942원(원금 189,000,000원 + 이자 2,482,942원) 등 합계 1,061,350,6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제1 내지 3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각 보증잔액금원에 대하여 보증료납입일 다음날부터 각 대위변제일 전까지의 위약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1,246,520원이고, 원고가 채권보전조치비용 등으로 대지급금을 지출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한 금액은 7,564,828원이다.

1차보증	2021.06.03.	2021.08.06.	297,000,000	$297,000,000 \times 16/1000 \times 63/365$ (2021.06.04.부터 2021.08.05.까지 63일간)	820,200
2차보증	2021.07.30.	2021.08.18.	475,000,000	$475,000,000 \times 13/1000 \times 18/365$ (2021.07.31.부터 2021.08.17.까지 18일간)	304,520
3차보증	2021.08.06.	2021.09.14.	90,000,000	$90,000,000 \times 13/1000 \times 38/365$ (2021.08.07.부터 2021.09.13.까지 38일간)	121,800
계					1,246,520

4) 원고가 위 각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정한 약정손해금율은 연 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 사건 제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해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후이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3일 전인 2021. 5. 4. C가 대출은행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이미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가 2021. 8. 6.부터 2021. 9.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4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제출명령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은 합계 5,616,385,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합계 8,296,000,000원으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적극재산]

1	화성시 H 공장용지 4128m ²	4,582,080,000	갑제12호증 감정평가서
2	H 지상 공장 450m ²	645,840,000	
3	H 지상 공장 330m ²		
4	I 도로 7m ²	13,090,000	
5	J 도로 21m ²		
6	K 도로 6m ²		
7	위 공장내 기계기구	375,375,000	
합계		5,616,385,000	

[소극재산]

1	L 은행		58,000,000	갑제13호중 업체별 월보 은행별계정과목별 조회(만기구조) [신용정보원이 2022. 6. 7.에 제출한 회신]
2	기업은행		18,000,000	
3		M	76,000,000	
4	E 은행		650,000,000	
5	D 은행		480,000,000	
6	F 은행		4,863,000,000	
7	N		221,000,000	
8	O		30,000,000	
9	P		20,000,000	
10	Q		9,000,000	
1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0,000,000	
12	원고		1,051,000,000	
13	피고 주 A		400,000,000	
14	피고 B		320,000,000	
	합계		8,296,000,000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C와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C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A은 C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 대여금채권 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 3억 2,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은 모두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은 2020. 12. 13. C로부터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전세보증금 30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C는 2021. 3. 9. 피고 A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6%, 변제기 2022. 3. 9.까지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21. 3. 10. 피고 A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300,000,000원 및 차용금 1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및 차용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이행각서를 피고 A에게 각 작성하여 준 사실, 이에 따라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와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F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040,000,000원 및 50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② C와 피고 A의 본점 소재지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으로 동일하고, C의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상주하고 있어 피고 A은 C의 회사 사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은 C가 전세보증금 30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C에게 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주면 이를 포함하여 즉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C의 요구에 응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추가 대여 및 근저당권설정의 경위 등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 A은 추가 대여금 지급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이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7,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가 2017. 12. 18.부터 2021. 2. 24.까지 C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29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F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5,040,000,000원 및 504,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피고 A 앞으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가 대출원리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2021. 5. 4.로부터 불과 3일 후에 체결된 점, ③ 피고 B는 C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자금을 담보 없이 약 3년간 계속적으로 대여하여 주다가 최종 대여금 변제일로부터 약 5개월 이상 지나서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거래관념상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건

판사국양근

판사임현화

별지